

의안번호	제 6 호
의 결	1998. 7. 10 .
년 월 일	(제 74 회)

의 결 내 용
취안가결

보은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

제 출 자	보 은 군 수 (지역개발과)
제출년월일	1998. 7 . 9 .

기 획 감 사 실 장 심사 

보은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(안)

의안 번호	6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8. 7. 9

제 출 자 : 보은 군 수

1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 변경(재정비)으로 추진하는 보은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
-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
-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출케 되었음.

2. 주요골자

- 상위계획인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지역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
경계조정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내용

- 도시계획구역 면적 : 6,225,000 m^2
- 일반주거지역 : 1,586,095 m^2
- 준주거지역 : 47,040 m^2
- 일반상업지역 : 176,160 m^2
- 준공업지역 : 72,000 m^2
- 자연녹지지역 : 3,129,600 m^2
- 생산녹지지역 : 1,214,105 m^2

○ 용도지구 결정 내용

(단위 : m^2)

번 호	지 구 명	지구의 세분	면 적	비 고
1	교사 취락지구	자연 취락지구	14,000	
2	월송 취락지구	자연 취락지구	38,700	
3	수정 취락지구	자연 취락지구	45,100	

○도로시설 결정(변경) 내용

(단위 : ㎡)

구 분	합 계		1 류		2 류		3 류	
	연 장	면 적	연 장	면 적	연 장	면 적	연 장	면 적
계	53,519	661,715	12,683	310,855	26,162	251,716	14,674	99,144
대 로	6,297	220,395	6,297	220,395				
중 로	10,570	166,300	2,660	53,200	6,060	90,900	1,850	22,200
소 로	36,652	275,020	3,726	37,260	20,102	160,816	12,824	76,944

○공원시설 결정(변경) 내용

(단위 : ㎡)

번호	시 설 의 세 분	시 설 명	면 적	비고
1	이 평 공 원	도 시 자 연 공 원	153,000	
2	죽 전 공 원	도 시 자 연 공 원	236,350	
3	장 신 공 원	근 름 공 원	61,400	
4	중 앙 공 원	근 름 공 원	19,000	
5	교 사 공 원	근 름 공 원	68,000	
6	교 사 공 원	체 육 공 원	5,300	
7	삼 산 공 원	어 린 이 공 원	4,100	

○학교시설 결정(변경) 내용

(단위 : ㎡)

번호	시 설 의 세 분	시 설 명	면 적	비고
1	보은 농업고등학교	학 교	103,400	
2	삼산 초등학교	학 교	21,791	

○운동장시설 결정(변경) 내용

(단위 : ㎡)

번호	시 설 의 세 분	시 설 명	면 적	비고
1	공 설 운 동 장	운 동 장	61,400	

○공용의청사 결정 내용

(단위 : ㎡)

번호	시 설 의 세 분	시 설 명	면 적	비고
1	군 청	공 용 의 청 사	31,400	
2	읍 사 무 소	공 용 의 청 사	4,450	
3	우 체 국	공 용 의 청 사	1,100	
4	경 찰 서	공 용 의 청 사	6,800	
5	교 육 청	공 용 의 청 사	6,450	
6	국도유지건설사무소	공 용 의 청 사	21,500	

○노외주차장시설 결정 내용

(단위 : ㎡)

번호	시 설 의 세 분	시 설 명	면 적	비고
1	불노천 주차장	노 외 주 차 장	9,210	

○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내용

(단위 : ㎡)

번호	시 설 의 세 분	시 설 명	면 적	비고
1	분 뇨 처 리 장	수질오염방지시설	8,133	

○하수도시설 결정 내용

(단위 : ㎡)

번호	시 설 의 세 분	시 설 명	면 적	비고
1	하수종말처리장	하 수 도 시 설	13,000	

3. 근거법령

○도시계획법 제 11 조

첨부 : 보은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서(안)